

英國의 公共圖書館法研究

崔 達 鉉*

〈目 次〉

- | | |
|----------------------|--------------------------|
| I. 緒論 | V. 1964公共圖書館法과 1974地方自治法 |
| II. 公共圖書館法發生의 社會的 背景 | VI. 結論 |
| III. 公共圖書館法 改正의 方向 | |
| IV. 圖書館法改正을 爲한 諸政策研究 | |

I. 緒論

圖書館奉仕의 起源은 人類文明의 黎明期에까지 邊及될 수 있으나 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 一般 모든 國民에게 自由로이 利用됨과 더불어 政府의 關心을 모우게된 것은 公共圖書館法이 最初로 英國⁽¹⁾에서 制定된 19世紀後半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그 以前에도 市民을 爲한 公共圖書館活動이 全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少數의 利用을 爲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近代市民社會의 形成에 따른 市民意識의 高潮와 教育機會의 擴大로 말미암아 圖書館施設이 繼續一部層에게만 利用될 수는 없게 되었다. 公共圖書館은 1949年에 發表된 유네스코의 公共圖書館宣言(Public Library Manifesto)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近代 民主主義의 產物로서, 萬人の 平生教育에 對한 民主主義의信念이 實質的으로 具現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國民은 어떠한 職業이나 信仰, 階級, 人種, 年齡, 또는 性別에 依하여도 差別받지 않고 平等하게 自由로이 圖書館奉仕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모든 國民이 所定의 教育을 받을 權利와 마찬가지로 法律에 依하

* 慶北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圖書館學科

(1) 本 論文에서 英國이라고 함은 England와 Wales를 뜻하고 있음.

2 도서관학논집

여 保障되고 있다.

그러나 國家와 個個人의 幸福을 追求하기 為한 教育 特히 學校教育의 重要性은 政府나 國民이 쉽게 理解하고 認定하면서도 急變하는 社會에 適應하고 自己完成과 發展을 為하여 平生동안 繼續되어야 할 生涯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積極的인 政策을 樹立하여 實踐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꼭 인색하여 왔던 것이 事實이었다. 人間의 一生을 通하여 볼 때 學校로부터의 卒業은 教育의 終點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教育의 始發點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萬一 그렇지 않고 教育이 學校卒業과 同時に 終熄된다고 한다면 個人이나 國家의 發展과 向上도 함께 끝나고 말것인즉 平生教育(long-life education)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平生教育은 學校教育과는 달리 스스럼 問題를 發見하고 解決하여야 할 自己學習過程으로써만 그 目的을 成就할 수 있는바 이에는 무엇보다도 爆發的인 情報의 洪水속에서 가장 自己에게 適合한 情報의 迅速한入手와 效果的인 利用이 要請되는바 이때문에 公共圖書館의 機能이 重視됨은 當然한 結果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S. R. Ranganathan은 *Free Book Service for All*에서 公共圖書館奉仕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이敘述하고 있다.⁽²⁾

成人들에게 自由로이 圖書를 提供하는 걸없이 다만 모든 어린이들에게만 無償教育을 實施한다는 것은 지붕없이 흙담장을 짓는것과 같다. 나아가서 많은 國家에서 出現한 市民政府는 投票權者의 繼續的인 自己教育이 없이는 民主主義가 爆破되고 만다는 民主主義의 本性을 認識하고 있다.

市民을 為한 平生教育機關으로서 重要的 意義를 갖는 公共圖書館은 그러면 如何히 그 設立目的과 本來의 機能을 充實히 遂行하고 모든 市民에게 가장 適合하고도 標準化된 圖書館奉仕를 提供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에 對한 가장 效果的인 方策을 講究하기 為하여 各國은 各國대로 國家的努力을 傾注함은勿論 國際的으로도 共通의 目標를 為하여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하여

(2) Mittal, Roshan Lal. *Public Library Law: an International Survey*. Delhi, Metropolitan Bank, 1971. p.10.

았다. 그結果 效果的인 公共圖書館奉仕는 適切한 立法에 依하여서만 成就될 수 있다는데 意見을 같이 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公共圖書館宣言에서도 國民을 為하고 國民에 依하여 運營되는 民主的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은 明確한 法律的權限에 依하여 設立되고 維持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³⁾ 1953年 나이제리아 이바단(Ibadan)에서 처음으로 開發途上國家의 公共圖書館에 關하여 開催된 세미나에서도 “圖書館官廳은 法律에 依하여서만 國家의in 標準에 따라서 奉仕하고 適切한 財政的支援과 效果的行政을 圖謀할 수 있다”고 開明하고 있다.⁽⁴⁾ 또한 1955年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 公共圖書館分科에서 刊行한 書面에서도 모든 國家는 圖書館法을 採擇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具體的으로 規定되어야 할 條項들을 提示까지 하고 있으며 同年 印度 Delhi 圖書館에서 開催된 유네스코의 또 다른 公共圖書館세미나에서도 다시 한 번 公共圖書館에 對한立法이 討議되고 永久的이고 進取의in 國家公共圖書館奉仕를 提供하기 為한 全體的in 統制는 오직 法律에 依하여서만 成就될 수 있다고 提案하고 있다.

公共圖書館은 그 目的과⁽⁵⁾ 性質上 永久的이고 標準的이며 全市民의奉仕를 提供하여야 하는바 이는 必然的으로 急速한 社會의 變遷이나 政權 또는 政府의 形態에 關係없이 가장 確實하고도 恒久的in 制度的裝置로서의立法을 必要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現代公共圖書館이 特히立法을 必要로 하게 된 理由를 Roshan Lal Mittal은 다음과 같이 列舉하고 있다.⁽⁶⁾

1. 圖書館奉仕의 經費解決
2. 民主社會에 關하여서의 全市民에 對한 無料奉仕
3. 標準的이며 普遍適切한 圖書館奉仕의 提供
4. 圖書館奉仕의 效果提高

(3) Gardner, Frank M. *Public Library Legislation: Comparative Study*. Paris, Unesco, 1971, p.17.

張仁植. 共圖書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p.41.

(4) Unesco.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Establishing a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S*. Paris, Unesco, 1977, p.38.

(5) 現代公共圖書館의 目的에 關하여는 前記 Unesco의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p.36 參照

(6) Mittal. 前揭書, pp.6—8.

5. 政府와 市民의 圖書館認識 仰揚
6. 圖書館計劃의 樹立
7. 恒久的이고 安定된 圖書館奉仕

이 같은 公共圖書館法制定의 必要性은 오늘날 開發國家와 開發途上國家를 莫論하고 性質上差異는 있을지언정 國家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當面課題中의 하나가 되고 있다.⁽⁷⁾

우리나라는 1963年 圖書館法이 單一法으로 처음 制定된 以來 1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近代化에 따르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狀況의 一大變革에 適應하는 法改正이 없었기에 그동안 館界와 學界에서 現行法上의 問題點이 크게 舉論되어 왔고 特히 近年에는 國務總理室 行政改革委員會에서 國家圖書館 政策立案을 爲한 背寫眞이 한때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韓國圖書館協會는 數次에 걸친 法改正의 草案作成과 이의 推進을 爲한 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本論文은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現實的인 課題로서의 法改正運動에 着目하여 國土와 人口의 크기가 우리와 비슷하여 公共圖書館法을 1850年에 처음으로 制定하여 그뒤 各國의 圖書館法改制定에 크게 影響을 끼치고 있는 英國의 公共圖書館法의 發展過程을 考察하고 그 實在를 파헤침으로써 現代公共圖書館法이 指向하고 있는 目標와 方向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⁸⁾

II. 公共圖書館法發生의 社會的背景

1850年的 英國의 公共圖書館法은 18世紀末에서 始作된 產業革命의 結果 招來된 一連의 社會改良運動의 하나라고一般的으로 說明되고 있다.⁽⁹⁾ 政治的

(7) Gardner, 前揭書, p.15.

(8) 英國의 公共圖書館法은 博物館과 함께 規定하고 있지만 本論文에서는 圖書館關係條項을 考察對象으로 하였다.

(9) Kelly, Thomas, *A History of Public Libraries in Great Britain: 1845—1975*,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7, p.3.

으로는 새로운 工業都市의 形成에 따른 農村人口의 移動과 新興中產階層의 勢力伸張으로 말미암아 議員選舉權의 擴大를 為한 選舉法改正이 1832年에 이루어졌다. 勿論 이 法으로서 勞動者, 農民層에게까지 選舉權이 賦與된 完全한 普通秘密選舉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有權者數가 改正前에 比하여 4倍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¹⁰⁾ 都市中產層을 中心으로 한 市民階層이 크게 勝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民主主義의 크나큰 前進이라고 할 수가 있다.

經濟社會的으로는 어린이勞動의 禁止와 少年 및 婦女子들의 労動時間制限을 為한 1816年, 1833年, 1842年, 1844年, 1847年, 1850年 等의 工場法(Factory Acts)을 비롯하여 讀書意慾의 增進에 따른 印紙稅의 引下, 市議會의 放縱과 腐敗와 公共福利의 度外視現象을 止揚시키기 為한 1835年の 自治團體法(Municipal Corporations Act)의 制定, 非人道的 死刑制度의廢止(1821), 植民地 奴隸制度의 撤廢(1833)等 數많은 人道主義的 改良運動이 展開되었다.⁽¹¹⁾ 이 時代의 人道主義的, 博愛主義의 思潮는 1832年 選舉法이 改正된 以後 나타난 文學作品들에서 가장 잘 엿볼 수가 있다. *Uncle Tom's cabin*, *Les miserables*, *Oliver Twist*, *David Copperfield* 等의 作品은 모두 가난한 者와 壓迫을 받는者에 對한 同情을 불러 일으키려는 意圖를 가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²⁾ 英國의 地方自治를 研究하는 史家들도 19世紀의 社會改良을 為한 數많은 法案과 施策들은 모두 資本主義生產體制에 基盤을 두고 있는 國家가 그 偉大한 目標와 目的을 遂行하기 為하여는 生產階層인 勞動者들의 道德的, 知的, 身體的條件의 改善이 同伴되어야 한다는 것을 認識한 바서 緣由된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¹³⁾ 結局 19世紀에 들어와서의

(10) Rickard, J. A. *History of England*. New York, Barnes & Noble, 1953. p.176.

(11) 其外에도 1833年에 처음으로 教育에 對한 政府의 補助라든지, 1834年的 改正救貧法(Poor Law Amendment Act), 同年の 刑務所法(Prisons Act), 1842年の 鎳山法(Mines Act), 1848年の 公衆保健法(Public Health Act)等을 들 수 있다.

(12) Becker, Carl. *Modern History: the Rise of a Democratic, Scientific, and Industrialized Civilization*. New York, Silver Burdett, 1952. p.336.

(13) Pemberton, John Edward. *Th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antecedents, provisions and effects* (Unpublished M.A. thesis 1975). p.1.

위와같은 諸社會思潮는 크게 民主的基盤의 擴大와 人道主義에 立脚한 社會的 改良을 指向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1850年의 公共圖書館法도 마치고 보면 이러한 歷史的 社會的背景을 가지고 制定된 時代的產物로서 一般納稅者들의 要求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資本主義의 發達과 더불어 發生한 勞動者問題의 解決이라고 하는 多分히 社會政策的, 戰略的 意義를 가진立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當時 勞動者들은 1832年에 選舉法이 改正되었다 해도 投票權이 그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低賃金과 不利한 勤勞條件, 非衛生的인 作業環境과 悲慘한 住居環境等으로 그들의 生活은 말이 아니었다. 더욱 各種學校施設(初等, 夜間, 曜日, 成人, 職工, 私立學校等)을 通한 教育機會의 擴大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벌써 읽고 쓸 能力を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맞아들일 圖書館이나 文化的施設은 極히 적었던 것이다.⁽¹⁴⁾ 그들의 不滿을 解消시켜주고 健全한 思考와 生活으로 誘導시켜줄 施設의 不足은 곧 그들로 하여금 선술집(pubic-house)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드디어는 알콜중독과 酒類藥種의 統制問題는 當時의 큰 社會問題로 까지 되었다.

公共圖書館法의 議會通過의 主役으로서 끈질긴 執念과 意志로 끝내 同法을 貫徹시킨 William Ewart議員(1798—1869)도 同法案을 根本的으로 勞動者階層의 經濟的向上을 爲한 手段으로 生覺하면서 만일 그들에게 다른 구라과 여러나라의 勞動者처럼 公共圖書館의 恩澤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¹⁵⁾ 即 적어도 公共圖書館을 稅金에 依하여 設置하여 勞動者들이 自由로이 책을 읽을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들에 依하여 빚어지는 社會犯罪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同法은 議會를 通過하였고 1868年까지 設置된 公共圖書館 27個 가운데 14個는 Liverpool, Manchester, Birmingham 等의 工業 및 商業地域에 設置되었던 것이다.⁽¹⁶⁾

(14) 上揭書. p.18.

(15) Kelly. 前揭書. p. 26.

(16) 上揭書. p. 23.

따라서 1850年의 公共圖書館法은 市民의 要求와는 距離가 먼, 所謂 Charles Dickens가 命名하고 있는 “가난한者の 家庭에 教育을 가져다 주는것을 目標로하는 偉大한 自由學校”를 만들어 줌으로써 飲酒와 犯罪에 代身할 建設의手段을 提供하려는 社會改良主義者들의 試圖였음에 異論이 없다고 하겠다. ⁽¹⁷⁾

III. 公共圖書館法 改正의 方向

1850年 公共圖書館法은 稅金에 依한 公共圖書館의 設置와 運營 및 無料公開主義原則을 確立하였는데 큰 意義가 있겠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圖書館官廳(library authorities)의 種類, 經費支出의 總額과 方法, 法律採擇의 節次等에 關한 많은 制約條件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法制定以後 現行 1964年 公共圖書館法과 1972年 地方自治法에 이르기까지 無慮 14回에 達하는 빈번한 改正이 있었다. 公共圖書館의 滿足스런 機能遂行을 為해서는 初期부터 内在하고 있었던 이력한 諸制約을 除去하여야 하였으며 實際로 1850年 以後 改正된 法改正들은 모두 그러한 方向으로 推進되었던 것이다. ⁽¹⁸⁾

當初의 圖書館法은 人口 1萬名이 넘는 自治市(municipal borough)를 適用對象으로 하고 圖書館法의 採擇은 納稅者(burgess)의 特別會合에서 總投票의 $\frac{2}{3}$ 以上의 多數 支持를 얻어 決定되어 土地 또는 建物의 買入, 賃借, 新·改築 等을 為하여 獨立稅를 徵收하되 地方稅(borough rate) 課稅對象財產의 年度別 評價額에 對한 과운드當 0.5페니(penny)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稅金으로 圖書館利用에 必要한 設備와 備品을 購入하고 職員을 任用할 수 있으며 圖書館資料의 購入에는 使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¹⁹⁾ 그 것은 一端 圖書館施設만 갖추어지면 慈善家나 團體들에 依하여 圖書館資料는 寄贈될 것이라는 希望的인 생각을 가졌던 탓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當時

(17) Pemberton, 前揭書, p.2.

(18) Kelly, 前揭書, p.20.

(19) Public Libraries Act, 1850, 13 & 14 Vict. c.65.

의 社會的 時代的 風潮로 미루어보아 過去 無理가 아니었을 것이다. 要컨
네 1850年法의 制定이前述한 바와같이 社會組織의 底邊에서 나온 要求에
의한 것이 아니고 社會改良主義者들에 依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中央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積極的으로 公共圖書館政策을 實踐하려는 意圖의 結
晶이라고 할수는 없고 다만 納稅者들이 同意하면 稅金으로써 無料公共圖書
館을 設置 運用할 수 있다는 國家의 消極의 意思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
다. 法適用을 都市地域에만 限定하고 또 稅金의 上限을 定한 것도 따지고
보면 擔稅力を 考慮한 듯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都市社會問題를 解決하는 方
案의 하나로 立法은 하되 稅負擔이 늘고 地域間 圖書館奉仕의 不均衡으로 因
한 새로운 政治的, 社會問題의 育起를 預치 않았던 탓으로도 解釋이 된다.

制定當初부터 内在하고 있는 制約들은 議會內 Ewart의 繼續의 意努力에
의하여 먼저 1855年의 法改正에서 除去되기 始作하였다. 即 人口制限을 萬
名에서 5,000名으로 낮추어 法適用을 自治市以外 農村에까지 擴大할 수 있
게 하고 特히 農村地域에 보다 많은 公共圖書館奉仕를 提供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英國의 傳統의 最下行政單位인 教區(parish)가 두個以上隣接하고
있고 人口가 합해서 5,000名을 넘는 경우에는 協定에 依하여 本法의 適用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其外 1855年法은 또 稅金의 上限을 1페니로 上向調整하
고 圖書以外 新聞과 地圖等 非圖書資料까지 公共圖書館에서 購入, 備置토록
하여 奉仕類型의 多樣化와 質의 深化를 企圖하였다.⁽²⁰⁾

人口의 制限이 完全히 除去되는 Ewart로서는 마지막 立法인 1866年의
法改正에서였다.⁽²¹⁾ 이 法은 1855年法의 部分의 改正과 同時に 英國과 스코
틀랜드의 각各相異한 公共圖書館法을 一敘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 法律이자
만 公共圖書館法 發達史上 두가지의 貢獻을 하고 있다. 即 人口制限의 完全
한 撤廢와 더불어 法採擇의 可決定足數를 總投票의 $\frac{2}{3}$ 에서 單純過半數로 하
고 圖書館 또는 博物館의 어느一方이 本法에 依하여 設置되어 있을때는 別

(20) Public Libraries Act, 1855, 18 & 19 Vict. c.70.

(21) Public Libraries Amendment Act (England and Scotland), 1866, 29 & 30 Vict. c.114.

途의 節次 없이 圖書館官廳은 他方을 設置할 수 있도록 圖書館設置의 節次를 簡素化하여 公共圖書館의 設立을 促進시켰다는 點이다.

다음 1884年の 法改正에서는 公共圖書館으로 하여금 議會의 補助金을 受領할 수 있도록 許容함으로써 圖書館의 地位를 完全하게 만들었으며⁽²²⁾ 1887年에는 圖書館官廳이 獨立된 建物을 갖지 않고도 貸出圖書館奉仕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850年法 以來 至今까지 中央政府의 財務長官이 가지고 있던 圖書館目的의 土地買入이나 建物의 新改築等을 為한 起債承認權을 地方議會에 權限을 委讓함으로써 또한번 效率的인 公共圖書館奉仕를 促進시키기 為한 政策的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²³⁾ 公衆集會(public meeting)에서 法探擇與否를 決定하던 當初부터의 方法이 直接投票의 方法으로 바뀌게 된것은 1890年の 일이었으며⁽²⁴⁾ 1855年の 公共圖書館法을 母法으로 한 위의 諸改正法律들에 依하여 英國內 公共圖書館의 普及은 크게 促進되어 初期 約 40年間에는 一年에 平均 3~4個의 圖書館이 設置되던 것이 19世紀末에 즈음해서는 平均 16~17個로 늘어 났으며⁽²⁵⁾ 1850年 以前에 3個에 不過했던 公共圖書館은⁽²⁶⁾ 1890년까지는 160個를 上廻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1855年の 母法을 中心으로 附隨法律이 여섯개에 이르고 보니 法運用上 많은 混亂을 避할수가 없었다. 따라서 1892年에는 英國圖書館協會(Library Association)의 助言과 도움으로 만들어진 草案을 土臺로하고 Ewart의 後身이라고 알려진 John Lubbock議員의 努力에 依하여 일곱개의 法律들을 全面 統廢合한 公共圖書館法이 制定되었고, 이 法律은 1964年公共圖書館法이 만들어 질때까지 70年 以上 母法으로서 作用하여 왔다.⁽²⁸⁾ 同法은 圖書館官廳에 對한 用語를 單純화하고 또 自己行政區域以外의 住民들이 公共圖書館을 利用하려고 할때는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는等 새 規

(22) Public Libraries Act, 1884, 47 & 48 Vict. c.37.

(23) Public Libraries Acts Amendment Act, 1887, 50 & 51 Vict. c.22.

(24) Public Libraries Acts Amendment Act, 1890, 53 & 54 Vict. c.68.

(25) Kelly, 前揭書, p.16.

(26) 이 세개의 圖書館은 Canterbury (1847), Warrington (1848), Salford (1850)圖書館들이다.

(27) Pemberton, 前揭書, p.8.

(28) Public Libraries Act, 1892, 55 & 56 Vict. c.53.

定들도 없지 않으나 1次的으로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公共圖書館法을 單一法律로 統合하였는데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²⁹⁾ 그것은 지금까지 除去하지 못하였던 圖書館發展의 障害要因을 하나도 解決하지 못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1893年에 改正된 圖書館法은 1892年的統合法을 都市地域에 適用할 때의 節次를 따로이 마련한 것으로서 特記할 것은 지금까지 住民들의 意思決定方法으로 使用하여오면 投票方法을 止揚하고 公共圖書館法의 採擇을 包含하여 모든 決定을 地方議會에서 하도록 하였다는 點이다.⁽³⁰⁾

20世紀에 들어서는 1901年, 1919年的部分的改正에 이어 1964年에 全面的인 公共圖書館法改正이 있었다. 1901年的法改定에선 圖書館官廳이 公共圖書館法을 採擇할 때는 즉시 中央政府의 地方自治委員會(Local Government Board)에 書面으로 通告하도록 함으로써 財務省에 이어 두번째로⁽³¹⁾ 中央政府機關이 公共圖書館法에 浮上되었다. 또 同法에서는 圖書館의 利用과 保存에 必要한 條例制定權을 圖書館官廳에 부여하고 1898年에 만들어진 圖書館犯罪法(Libraries Offences Act)⁽³²⁾의 適用을 規定하고 있어 圖書館의 徵戒權을 크게 強化하고 있다.⁽³³⁾

公共圖書館發展에 가장 큰 阻害要因이었던 稅金의 上限과 小自治區域의 財政的 脆弱性問題는 오랫동안 英國圖書館協會의 꾸준한 努力도 있었지만 決定的으로는 教育界의 壓力에 依하여 1919年에 一舉에 解決이 되었다. 그래서 1919年이야말로 1850年以來 英國公共圖書館 發達史上 크게 중요한 立

(29) Fovargue, H. W. and Ogle, J. J. *Public Library Legislation; being the Law relating to Public Libraries and Technical Education, and All Statut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etc. in England, Ireland, and Scotland.* London, Simpkin, 1893. p.1.

(30) *Public Libraries (Amendment) Act, 1893, 56 Vict. c.11.*

(31) 財務長官은 1850年 圖書館法이 처음 制定될 때부터 地方自治團體가 年間稅金을 납부로 돈을 빌려 쓰고자 할 때 承認權을 가지고 있었다.

(32) *Libraries Offences Act, 1898, 61 & 62 Vict. c.53.* 이 法에 依하면 圖書館內에서 다음의 行爲를 함으로써 他人을 妨害하였을 때는 即決裁判에 依하여 40파운드 以下의 엄한 罰金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1. 無秩序한 行動 2. 亂暴한 言辭, 厥舌, 狠惡的 言辭等의 使用 3. 내기 또는 도박행위

4. 適切한 注意를 준 後에도 圖書館나 감시간 넘어서 남아 있기를 고집하는 행위

(33) *Public Libraries (England and Ireland) Act, 1901, 1 Edw. III. c.19.*

法이 이루어진 해라고 할수도 있다.⁽³⁴⁾ 稅金의 上限 撤廢運動은 英國圖書館協會가 中心이 되어 推進되어 왔고 1904年에는 議會에 法案으로 上程되기도 하였으나 成功하지 못하고 다시 1913年과 1914年에 거듭 上程되었으나 1次世界大戰의勃發로 中斷되고 말았다. 大戰이 끝난 1919年에는 政府의 成人教育委員會(Adult Education Committee)의 三次中間報告書에서 圖書館에 對한 べき 가지의 勸告를 提出하였는데 그것은 ① 稅金의 上限을 撤廢하고, ② 公共圖書館奉仕를 州(county)全域에 擴大시키며, ③ 公共圖書館에 關한 業務를 教育官廳(education authorities)에 移讓하고, ④ 公共圖書館에 關聯된 政府의 地方自治委員會의 權限을 教育委員會(Board of Education)로 移讓한다는 것들이 다.⁽³⁵⁾

稅金의 上限을 둔것은 元來 各地域間의 均衡을 考慮하였던 것이라 生覺되나 1次大戰으로 加速된 貨幣價值의 下落은 必要한 圖書館奉仕를 하기에는 너무나 現實에 맞지 않았다. 또한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가장 크고 強力한 行政官廳은 州政府(county council)가 되었는데도 圖書館의 權限은 가장 작고 힘이 없는 行政官廳인 教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더구나 많은 地域에는 圖書館奉仕가 全히 없었던 까닭에⁽³⁶⁾ 成人教育委員會의 提議는 圖書館協會와 카네기財團과의 三者共同의 努力에 依하여 1919年 圖書館法改正에 反影이 되었다.⁽³⁷⁾ 다만 稅金은 上限을 없앤 代身 圖書館官廳에서 年間稅額을 決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州政府를 英國圖書館史上 처음으로 圖書館官廳으로 登場시키긴 하였으나 既存 圖書館官廳의 地域은 그냥 두고 말았다. 그러나 同法은 教育省의 承認을 얻어 州政府의 權限을 特定地域에 限해 移讓할 수도 있고 反對로 既存 圖書館官廳의 權限을 吸收할 수도 있게 伸縮性 있는 法運用을 期하기도 하였다.

(34) Mittal, 前揭書, p. 76.

(35) Ministry of Reconstruction, Adult Education Committee, *Third Interim Report: Libraries and Museums* (Cd. 9237, 1919), pp. 18—19. In : Kelly, 前揭書, p. 216.

(36) Phillips, B. J., Beck, T., Maltby, A. *Public Libraries: Legislation, Administration & Finance*, London, LA, 1977. Para. 0.8에 依하면 19世紀에 設置된 教區圖書館은 不過 20개 정도라 한다.

(37) Public Libraries Act, 1919, 10 Geo V, c. 93.

教育委員會의 機能強化에 關하여는 圖書館協會의 反對에도 不拘, 同委員會의 壓力으로 稅金의 徵收와 借金을 除外한 모든 州政府의 圖書館問題를 州教育委員會에 回附토록 하여 州公共圖書館奉仕가 教育行政의 領域아래 를 이도록 하였다.⁽³⁸⁾ 地方自治委員會의 職能은 後身인 保健省(Ministry of Health)에 引繼되었으나 1920年에 公共圖書館에 關한 權限을 教育省에 移讓시킴으로써 教育省이 처음으로 公共圖書館과 關聯을 갖게 되었다.

IV. 圖書館法制定을 爲한 諸政策研究

1919年의 法改正으로 徵稅額에 對한 上限은 없어지고 州政府가 圖書館官廳의 權限을 갖게되자 圖書館豫算의 增額과 州政府에 依한 圖書館奉仕地域의 擴大가豫想되어 全國에 均衡있는 公共圖書館發展이 期待되었던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法의 採擇과 運用이 自治團體의 任意事項으로 되어있고 또 全國的인 公共圖書館基準도 없었을뿐 아니라 稅金의 徵收額과 圖書館의 歲入이 地域마다 相異한데도 이를 調整하고 統制할 政府機構조차 없음으로 因하여 圖書館奉仕面에서 行政區域마다 甚한 不均衡이 全國的으로 白來되었다. 더욱 이러한 差異를 解消할 中央으로부터의 財政的 支援이나 圖書館의相互協力에 依한 自救策마저도 없었던 것이다.

近代의 公共圖書館이 비록 19世紀의 社會改良主義者들에 依하여 始作은 되었지만 國民教育과 文化發展에 偉大한 潛在力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國家가 認識하게된 今世紀에 들어와서는 公共圖書館이 性質上 地域住民의 意思와 資源에 依하여 設置運營되어져야할 地方官廳의 職能에 屬한다고 하드라도 모든 國民에게 適當하고 標準된 圖書館奉仕를 提供하고 地域間의 均衡있는 公共圖書館發展을 期하기 爲하여는 國家나 政府는 더以上 外面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19年 以後 現在까지는 國家의 圖書館發展에 對한 指

(38) 既存圖書館官廳은 獨立된 圖書館委員會를 가지고 있음에도 州圖書館奉仕은 教育委員會에 예속시킴으로써 二元體制를 갖게 되었다.

導統制機能과 調整監督機能의 強化, 農村地域에 對한 圖書館奉仕의 擴大, 그리고 效果的인 圖書館奉仕에 必要한 基準設定, 이 基準을 充足시킬 수 있는 行政區域의 再調整, 圖書館相互協力體制의 構築等을 為한 政府와 圖書館協會 및 地方自治團體, 三者間의 對立과 和合의 긴 歷史라고 할수가 있다.

그동안 以上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政府는 Kenyon報告書를 비롯해 서 여러 專門의in 調查研究를 實施, 國民의 最大公約數를 集約하는데 繼續的인 努力を 傾注하였으며 圖書館協會 또한 獨自의in 研究와 調査를 通하여 公共圖書館이 안고있는 縣案의 問題解決에 没頭하는一方 政府와 議會에 對하여 積極的인 說得과 로비活動을 展開하여 왔다. 그러나 現存 圖書館官廳과의 利害相衝때문에 세로운 立法을 가져오기까지는 40年이란 歲月이 所要되어 1964年에야 비로소 從前의 모든 圖書館法은 廢棄되고 現行法이 制定, 1965年부터 施行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이 法을 制定함에 있어 根據가 된 重要政策研究들을 簡單히 살펴보고 이들이 現行法에 어떻게 投影되었으며 그 影響은 어떤것인가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1919年 圖書館法 改正으로 稅金의 上限이 없어진지 5년이 지난 1924년까지도 英國內에는 1ヶ니 以下의 稅金을 賦課하고 있는 圖書館官廳이 全體 482個 가운데 169個나 있었으며⁽³⁹⁾ 1925年 統計로 公共圖書館施設이 없는 地域의 住民만해도 600萬, 圖書館法이 採擇안된 地域의 住民은 全體人口의 4%나 되었다.⁽⁴⁰⁾ 이에 政府는 1924年 “既存 公共圖書館法 아래서의 圖書館奉仕의 履行實態와 이의 全國的인 擴散과 完成을 為한 方案을 檢索하기 為하여”⁽⁴¹⁾ Frederick Kenyon卿을 委員長으로 하는 公共圖書館委員會(Public Libraries Committee)를 任命하였고 同委員會는 圖書館奉仕의 實態를 廣範하게 調査하여 建議案과 함께 1927年 報告書를 提出하였다. 이에 依하면 多様한 趣味와 欲求를 가진 公衆에게 奉仕하기 為하여는 人口가 적어도 2萬은

(39) Kelly, 前揭書, p. 233.

(40) Pemberton, 前揭書, p. 19.

(41) Public Libraries Committee, *Report on Public Libraries in England & Wales* (Kenyon Report), cmd 2868. London, HMSO, 1927. p. 8.

넘어야 效果의이며 萬名도 안되는 小圖書館은 財政的으로 脆弱하기 때문에 非經濟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解決하는 方案으로서는 人口가 적은 小圖書館官廳은 그 權限을 州에 讓渡하거나 아니면 自發的인 協力基盤위에 圖書館相互協力體制를 確立함으로써 財政의 零細性으로 因한 圖書館資料의 不足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教區의 勢力이 큰 힘을 가지고 있던當時의 事情을 反影, 同報告書는 前者의 方案보다 後者에 더욱 慎重하였다. 그래서 1916年에 세워진 學生中央圖書館(Central Libraries for Students)을 改編하여 國家中央圖書館(National Central Library)으로 하고 그 運營을 爲하여 政府는 年 5,000파운드를 支援할것과 全國 여덟개의 大都市圖書館을 地域센타로 하는 公共圖書館網을 組織할것을 建議하고 있다. Kenyon 報告書는 뛰어온 世界的經濟恐慌과 二次世界大戰의勃發로立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公共圖書館에 對한 中央政府의 支援과 地域圖書館間相互協力を 強調하였는데 意義가 있으며 1932年 改編되면서 中央政府로부터 年 3,000파운드씩 支援을 받게된 國家中央圖書館은 直接 이 報告書의 所產이었던 것이다.

二次大戰中 政府가 戰爭에 没頭하고 있는 동안에도 圖書館協會는 카네기 財團의 後援을 얻어 1941年 Lionel R. McColvin에게 戰時公共圖書館問題와 戰後問題를 다루기 爲한 調査研究를 委嘱, 그 結果 1942年 報告書가 마련되었다.⁽⁴²⁾ McColvin은 圖書館奉仕가 全國的으로 均衡있게 發展되지 못하는 原因을 찾기 爲하여 人口와 圖書館奉仕의 效率性間의 相關關係를 追求하였으며 解決策으로 圖書館官廳의 人口單位를 30萬乃至 80萬으로 할것과 果敢한 地方政府組織의 改編을 主張하였다. 너무나도 革命的인 提案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公共圖書館은 國家行政의 태두리밖에 位置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法採擇조차 하지 않고 있는 官廳이 있다고 判斷, 地方官廳의 圖書館奉仕를 義務化하고 政府내에 圖書館行政專擔部署를 新設하여 最低

(42) McColvin, Lionel R. *The Public Library System of Great Britain*(McColvin Report).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42.

基準에 맞는 圖書館奉仕의 履行을 監督하고 支援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는 分明 Kenyon報告書가 既存 圖書館官廳의 權限을 溫存시키면서 圖書館相互協力에 問題解決을 案索하려고 하던 態度와는 正反對되는 立場이었다. McColvin은 圖書館相互協力問題에 있어서 Kenyon과는 다른 主張을 하고 있다. 即 ① 地域圖書館事務局(Regional Library Bureau)을 廢止하여 國家保存圖書館(National Reserve Stock)과 調査 및 學問을 爲한 11個의 地域參考圖書館(Regional Reference Library)을 設置하고 ② 國家中央圖書館의 責任은 非一般資料(non-general material)에 對한 綜合目錄의 維持管理와 이들 資料의 圖書館間貸借를 主로 하는 書誌情報센타와 中央編目機關으로 存在하여야하며 ③ 그 財政을 地方官廳에 分擔시킬것이 아니라 國家가 全額 負擔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戰後가 되자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教育의 모든 分野에서 急速한 變化가 일어났고 公共圖書館도 例外는 아니었다. 그것은 需要者로서의 利用者와 供給者로서의 圖書館側 各各으로부터 原因을 찾을 수 있는바 먼저 利用者側에게는 豐饒로운 社會를 맞아 餘暇時間이 늘어나게 되었고 사람들 關心의 幅이 넓어지고 多樣化하게 되었으며 高等教育의 壓力이 繼續 增大되었다. 다음 圖書館側에 있어서는 보다 좋은 建物과 安樂한 設備와 세롭고 魅力的인 裝幀을 가진 資料를 가지고 보다 發達된 展示技術을 利用, 高度의 專門職奉仕를 提供하게 되었다。⁽⁴³⁾

이러한 要因들로 因하여 公共圖書館奉仕는 크게 增進되었다.⁽⁴⁴⁾ 그러나 圖書館行政區域間의 圖書館奉仕水準은 一定치 않았으며 그 差異는 最上의 水準에서 最下에 이르기까지 極甚하였다. 甚至於 두개의 비슷한 人口를 가진 圖書館官廳에서 조차 하나는 他的 倍나 되는 經費를 使用하고 있기도 하고 人口 5,000未滿의 작은 邑(town)에도 獨立된 圖書館官廳이 設置되어 스

(43) Kelly, 前揭書, p.353.

(44) 1919年에 5,000個 안되던 奉仕據點(service point)이 1958年에 25,000개로 증가되고 藏書와 年間貸出冊數도 각각 6천만권 以上과 4억권가까이로 늘어났다(Gardner, 前揭書, p.109).

스로 奉仕하고 있는가하면 이의 10倍나 되는 人口를 가진 市도 單純한 州의一部로서 分館的奉仕를 받고 있는곳도 있었다.⁽⁴⁵⁾ 따라서 二次大戰後의 公共圖書館의 歷史는 끝곧 1942年 McColvin報告書의 가장 核心部分인 圖書館官廳의 行政區域問題로 써를을 하면서 同報告書提案의 實現을 向하여 한발 한발 前進하여온 記錄이라고 할수 있다.

迷宮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圖書館行政區域의 크기에 關한 論難은 圖書館協會가 一端 協會意思로 決定을 보았던 McColvin報告書의 提案을 地方自治團體들과 再論하기 為하여 1946年 撤回하면서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⁴⁶⁾ 1950年 中葉까지 解決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뒤 政府에서 1957年 地方政府의 機能과 領域의 改編에 對한 白書를 發表하고 公共圖書館問題는 이와는 別途로 圖書館全體의 脈絡 속에서 考慮되어야 한다는 理由로 公共圖書館奉仕의 構造에 關한 委員會(Committee on the Structure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를 任命함으로서 再燃되었다. 同委員會는 前圖書館協會長을 歷任한 바있는 Sidney Roberts卿을 委員長으로 하고 McColvin을 包含한 各界代表 15名으로써 構成, 地方政府의 形態와 關聯된 公共圖書館의 現況을 檢討하기 始作하였다. 委員會가 부딛친 가장 큰 難題도 역시 圖書館行政區域에 關한 對立되는 두 見解의 調整이었다. 한 便에서는 公共圖書館을 地方의 劇場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은 娛樂 및 文化施設로 보기 때문에 그奉仕의 種類와 크기는 그 地方의 代表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또 다른 便에서는 圖書館奉仕는 健康과 教育처럼 基本的이며 너무도 重要하기 때문에 地方에만 맡겨 둘수가 없으며 그奉仕는 오직 效率性을 充分히 保障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진 官廳에게 맡겨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⁴⁷⁾ Roberts委員會는 이러한 相反되는 見解를 바탕으로 1959年 報告書를 提出하였는데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⁴⁸⁾

(45) Mittel. 前揭書. p.81.

(46)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48, May 1946. pp.139—140.

(47) Pemberton. 前揭書. p.75.

(48) Ministry of Education. *The Structure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 Wales*, (Roberts Report), cmnd 660. London, HMSO, 1959.

1. 모든 圖書館官廳은 法律에 依하여 効率的인 公共圖書館奉仕를 提供할 義務를 가지도록 한다.
2. 文教部長官은 公共圖書館에 對한 監督權을 가진다.
3. 長官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各界 利害集團의 代表로써 構成되는 諮問團을 設置한다.
4. 教區는 圖書館官廳이 될 수 없으며
5. 既히 圖書館官廳으로서 年 5,000파운드 또는 人口 1人當 10펜스 以上의 圖書購入費를 (製本費는 包含하지 않으며 1958年 經常價格임) 갖는 non-county borough 또는 urban district council은 繼續 圖書館權限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3年 以内에 이 基準을 達成하고 長官에게 申請後 適格判定을 받아 圖書館行政權을 갖는다.
6. 從前에 圖書館官廳이 아니던 non-county borough 또는 urban district council은 萬一 人口 5萬이 넘고 前項의 條件을 充足했을 때만 長官에게 申請을 할 수 있다.
7. 모든 州는 圖書館奉仕의 行政計劃을 長官에게 提出, 承認받아야 한다.
8. 모든 圖書館官廳은 獨立된 圖書館委員會의 任命權을 갖는다.
9. 其他 人事管理와 施設의 改善 및 圖書館相互協力에 對하여도 建議를 하고 있고 特히 相互協力에 關하여는, 地區委員會의 機能을 強化하고 同委員會 및 國家中央圖書館의 經費를 各圖書館官廳은 義務的으로 負擔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結局 Roberts報告書는 公共圖書館奉仕의 改善을 爲한 必須條件으로서 보다 크고 보다 自活性(viability)을 가진 圖書館官廳의 設置와 奉仕의 基準設定 및 適切한 政府部署의 監督을 바라고 있으나 작은 圖書館官廳이라도 一定의 標準된 奉仕를 할 수 있을 때는 民主的 地方自治의 原則에 따라 可能한 繼續 獨立的인 圖書館行政權限을 存續시키려고 하는데 떠물고 말았다고 하겠다.

政府는 새로운 立法을 함께 있어 原則的으로 Roberts 報告書를 採擇하기로 하되 獨立된 圖書館官廳의 要件으로서 人口 5萬名을 4萬名으로 낮추는 한편⁽⁴⁹⁾ 4萬名以下の non-county borough와 urban district에 있어서의 效率的인 公共圖書館奉仕에 對한 基本的인 條件과, 法律的으로 義務化되는

(49) 이는 分明 他行政官廳보다 낮은 基準으로서 例를 들면 1944年教育法에선 人口 6萬名을 獨立된 教育區廳의 基準으로 삼고 있다.

圖書館相互協力의 問題를 좀 더 技術的으로 다루기 為하여 1960年 두개의 實務委員會(working party)를 任命하였다. H. T. Bourdillon과 E. B. H. Baker가 各各 委員長이되어 Roberts報告書에 根據하여 만들어진 政府案에 對한各界의 意見을 調整하고 나아가 보다 具體的이고 細部的인 研究檢討를 實施, 1962年 報告書를 完成하였다.⁽⁵⁰⁾ Bourdillon은 圖書購入費가 꽤 많은 53個의 圖書館官廳(이는 全體官廳의 10%에 해당)을 選定, 그 奉仕實態를 分析한 結果 Roberts卿의 圖書館經費基準보다 藏書基準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하고 ① 獨立된 圖書館奉仕를 하기 為하여는 圖書館의 大小에 關係없이 年間 基本藏書로서 몇개의 範疇에 屬하는 圖書 7,200卷과 50種以上的 定期刊行物을 購入할 수 있어야 하며, ② 一般的으로 人口 1,000名當 90卷의 成人用 非小說類를 包含한 全分野의 圖書 250卷을 갖출수 있어야 한다고 建議하고 있다. 이는 結局 Bourdillon自身이 理想보다 實現主義에 立脚하여 政府의 意圖대로 따른것이라고 보여진다. Bourdillon은 나아가서 基準은 恒久的으로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諮詢委員會(Library Advisory Council)에 依해서 週期的으로 檢討되어져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其外에도 Bourdillon報告書는 職員, 施設等에 關한 基準도 提示하고 있으나 이들은 새로운 圖書館法에 크게 具現되지는 못하였다.

V. 現行 公共圖書館法

前述한 여러 報告書에 基礎한 새로운 公共圖書館法案이 1964年 1月에 議會에 上程되자 技術的인 事項에 對하여서만 討論이 있었을뿐 그目的에 對하여는 모든 與野政黨들이 支持, 같은 해 7月 31日 女王의 裁可를 얻어 全文 26條의 法律로 確定되고 1965年 4月 1일부터 效力を 發生하게 되었다.⁽⁵¹⁾ 本

(50) Ministry of Education.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 Wales: Rept & of the Working Party*(Bourdillon Report). 이 報告書를 通稱 Library Standards Report라고 하며 오늘날까지도 公共圖書館奉仕의 標準이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Interlibrary Cooperation in England and Wales: Report of the Working Party* (Baker Report).

(51)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c.75.

法은 1892年 以來의 모든 公共圖書館法을 統合한 것으로서 그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地方官廳에 依하여 提供되는 公共圖書館奉仕를 長官의 監督下에 두고 奉仕의 改善과 調整을 為한 새 規定을 만들기 위하여” 制定되었다. 다음에 英國公共圖書館 活動에 가장 큰 變化를 招來한 本法의 内容과 그 影響에 對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1. 國家가 처음으로 地方官廳에 依하여 遂行되는 公共圖書館奉仕의 發展을 促進하고 監督할 責任을 지게 되었다. 公共圖書館에 對한 國家의 關心은 오랫동안 圖書館界로부터 要求하여 오던 일로서 이는 일찍 1849年的 議會特別委員會報告書(1849 Select Committee on Public Libraries)를 비롯해 1917年的 Adams報告書, 1927年的 Kenyon報告書, 1942年的 McColvin報告書, 1957年的 Roberts報告書, 1962年的 Bourdillon과 Baker報告書等을 通하여 漸次的으로 強力하게 要求되어 오다가 마침내 本法에서 法文化되었다.⁽⁵²⁾ 具體的으로 長官이 行使할 權限을 볼 것 같으면

- 가. 地方官廳의 資料提示要求權(1조 2항)
- 나. 本法所定의 義務不履行時 地方官廳의 權限回収權(10조 2항)
- 다. 地方官廳의 職務에 對한 調査權(16조)
- 라. 議會에 對한 長官의 年例報告書提出義務(17조)
- 마. 圖書館諮詢委員會의 委員任命權(2조 2항)
- 바. 補助金支給權(9조 2항)
- 사. 其他 圖書館諸手數料(Charge)의 限度額決定權(8조 2항), 두개 以上의 圖書館官廳의 結合(Joint Board)承認權(5조 1항), 條例의 認可權(19조 1항) 等이 包含된다.

위와 같은 長官의 權限을 遂行하기 為하여 部內에 圖書館課(Libraries Division)⁽⁵³⁾를 設置하고 公共圖書館뿐 아니라 國家의 圖書館全般에 關한

(52) Shimmon, Ross. "The role of government in library development", In: Harrison, K.C., ed. *Prospects for British Librarianship*.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6. pp.72-88.

(53) Roberts 委員會가 組織되던 1957年부터 圖書館業務는 社會教育局(Further Education Branch)內 圖書館係(Libraries Section)에서 맡고 있었다. 1969年 4月에는 圖書館課와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그 主要任務도 ① 國家圖書館政策과 圖書館一般政策, ② 大英圖書館(British Library)의 財政, ③ 1964公共圖書館法의 圖書館部門管理, ④ 圖書館學 大學院 奨學, ⑤ 公共貸出權(Public Lending Right)等에 關한것들⁽⁵⁴⁾이다. 그동안 「圖書館奉仕의 基準에 對한 回狀」⁽⁵⁵⁾을 비롯하여 各種回狀(Circular)을 發行, 地方官廳에 對한 指針과 助言을 提供하는 한편 統計의 収集과 義務履行의 點檢等 廣範한 行政的事項을 處理하여 왔으며 個個의 圖書館을 對함에 있어서는 強制보다 說得에 依存하고 있지만 部內 圖書館顧問들에 依한 檢查報告書는 크게 有益한 效果를 가져왔다.⁽⁵⁶⁾

2. 圖書館問題에 對한 長官의 諮問에 答하고 또는 必要하다고 생 각되는 事項을 建議하기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두며 이에는 圖書館行政經歷을 가진者를 반드시 包含시켜야 한다(2조). 本規定에 따라서 1966年 1月에 同委員會는 各分野의 圖書館界人士로써 組織되어 公共圖書館과 其他 圖書館全般에 對한 諮問活動을 始作하였다.⁽⁵⁷⁾ 必要에 따라하는 圖書館課와 共同으로 아니면 單獨으로 調査研究活動을 實施 땐은 報告書를 作成하고 있으며 圖書館協會의 事務局長이 當然職委員으로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圖書館界의 意思가 政策에 反映될 수 있는 길이 制度的으로 確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問題의 圖書館官廳에 對하여는 ① county, county borough, London borough, City of London과, ② 本法施行直前의 圖書館官廳이었던 non

科學技術情報室(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이 합친 圖書館 및 情報 시스템局(Libraries and Information Systems Branch)아래 속했다가 1970年 7月 OSTI는 分離되어나가고 새로 생긴 藝術 및 圖書館局(Art and Libraries Branch)아래 隸屬. 現在 4名의 顧問/Library Advisor)을 두고 있다. 政府組織圖上 圖書館課의 位置에 對하여는 Jones, Arthur C. and Sewell, Philip H. "The Libraries Divisio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aunders, W.C., ed. *British Librarianship Today*.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6. p.152参照.

(54) 上揭書, p.151.

(55) 同基準에 依하면 ① 圖書館官廳은 적어도 7,200卷의 藏書 즉 人口 1人當 250卷(乙中 90卷은 成人用非小說類)을 가질 것과 ② 人口 2,500名爵 1人의 非勞務的職員(non-manual staff)을 가지되 그中 40%는 資格을 갖춘 專門職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London, HMSO, 1965. Circular 4/65).

(56) Kelly. 前揭書, p.428.

(57) 同委員會 아래에 Inter-library Cooperation,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Supply and Testing of Librarians의 3個 分科委員會가 있으며 마지막 分科는 다시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of Librarians와 Staffing of Schools of Librarianship의 두 質務委員會를 가지고 있다.

county borough와 urban district(4조 1항) 및 ③ 既圖書館官廳이 아니더라도 人口 4萬이 넘는 non-county borough와 urban district로서 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는(6조 3항) 모두 權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人口 4萬이 안되는 既存圖書館官廳에 對하여 長官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剝奪할수가 있고(6조 1항) 또 non-county borough나 urban district는 언제나 그 權限을 抛棄할수도 있도록 하였다.(6조 5항) 이에 따라 1959年에 484個이던 官廳이 1965年末에는 419個로 줄어들었는데 大部分 都市의 區廳과 教區圖書館들이 있다.⁽⁵⁸⁾

4. 모든 圖書館官廳은 效率的인 圖書館奉仕(efficient service)를 義務的으로 提供하여야 한다(7조 1항). 이로써 지금까지 任意法이었던 圖書館法이 비로소 強制法規化 되었다.

5. 州의 圖書館問題는 教育委員會에 반드시 回附하도록 規定한 1919年法이 廢棄로 因하여 그 義務가 없어졌다(별표 3). 法施行後 K. A. Stockham이 調査한 바에 依하면 約 50%以上의 州에서 獨立된 圖書館委員會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⁵⁹⁾

6. 圖書館相互協力を 促進하기 為하여 地域委員會(regional council)를 組織하여 圖書館地域은 部令으로 長官이 決定한다.(3조) 이는 1962年の Baker報告書에 基礎한 것이지만 現在까지 長官이 各地區를 決定한바가 없다. 그 것은 法制定後 地方政府組織의 改編作業이 進行中에 있었기 때문이다.

7. 本法은 公共圖書館의 奉仕機能의 모델을 잘 나타내고 있다. 即 ① 自己圖書館資料에 依하는 圖書館相互協力 또는 其他의 方法에 依하는 成人과 어린이들의一般的的 要求와 特殊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圖書館資料⁽⁶⁰⁾를 貸出하고 參考할 수 있어야하고, ② 圖書館利用을 嘉勵 指導하며, 情報奉仕를 提供하여야 하고, ③ 圖書館地域內 諸官廳사람들과 充分한 協力關係를 維持

(58) Kelly. 前揭書. pp.359—360.

(59) Stockham, K. A. "Counties and the Act", *Library World*, Vol. 67, April 1966, pp. 286—8.

(60) 이에는 圖書, 印刷物, 그림, 音盤, 편집 및 其他資料까지 擴大包含시켜 明文化하고 있다. (7조 2항)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조 2항). 利用과 管理規則의 制定에 對하여는 以前法律과는 달리 言及이 없으나 이것은 地方官廳固有의 權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⁶¹⁾

8. 圖書館은 無料로 自由로이 開放되어야 한다. 그러나 圖書, 定期刊行物小冊子等의 貸出에는 料金을 받을수 없다고 資料種類를 明示하고 있기 때문에 (8조 3항) 其他資料에 對한 使用料는 徵收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또한 豫約圖書의 通知, 資料의 返納督促, 書誌·目錄의 個人供給, 圖書館奉仕以外目的에 使用되는 施設等에 對하여는 長官이 定하는 最高額⁽⁶²⁾範圍內에서 手數料를⁽⁶³⁾ 받을수 있으며(8조 2, 4, 5항) 圖書館施設이 會合, 展示, 映寫, 音樂等 教育 및 文化活動으로 使用될 경우에도 入場料를 받을수 있게 하고 있다(20조).

大體로 從前의 公共圖書法은 지나치게任意的이어서 地方官廳에 絶對的義務를 賦課하지 아니하고 大體로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規定하는 傾向이 있는데 反하여 1964年圖書館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地方官廳에 對하여 積極적으로 무엇을 해야된다고 要求함으로써 모든 國民에게 效率의이고 均衡있는 圖書館奉仕를 提供하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⁶⁴⁾ 그러나 本法에서도 公共圖書館의 基本目的條項과 奉仕의 平準化를 爲한 政府補助金條項의 缺如를 비롯해서 既存地方政府 을타리로부터의 不脫皮, 利用者의 制限(7조 1항 단서) 等 아직도 不滿스러운 要素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法이 施行된 以後 公共圖書館의 航부진 發展은 바로 本法의 價值를 일러주는 尺度라고 생각된다. Denis Howell의 報告에 依하면 1965年 公共圖書館奉仕의 經費가 國民 1人當 10s. 6d⁽⁶⁵⁾였던것이 1966—67年에는

(61) Hewitt, A. R. *Public Library Law, and the Law as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England &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75. p. 36.

(62) DES Circular no. 4/65에 依하면 長官은 이의決定을 留保하고 있다. 따라서 料金은 地方官廳의 裁量에 남아있다고 하겠다(Hewitt. 上揭書, pp. 36—37).

(63) 罰金(fine)은 法律에 依하여야 하고 對公衆關係가 좋지 못하므로 使用料 或은 手數料(charge)란 用語를 쓰고 있다.

(64) Gardner, F. M. "The British Public Libraries Act, 1964",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19, Sept-Oct. 1965. p. 242.

(65) Howell, Denis. "Spend more on libraries", *Liaison*, Nov. 1965. p. 75.

15s 2d로 約 30% 增加되었다고 한다.⁽⁶⁶⁾ 또한 總經費와 더불어 圖書購入費, 藏書數, 職員數, 貸出圖書數, 職員基準等을 包括하여 1961年과 1968—69年을 對比하여보면 第 1表와 같고; 이는 곧 圖書館奉仕의 發展과 當初立法目的인 奉仕의 最低基準이 成就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965年公共圖書館法은 成功의 있다고 하는 Gardner의 評을 得 받침 해주고 있다.⁽⁶⁷⁾

第 1 表 1964年 法律前後의 公共圖書館 經費·藏書·職業等對比

	1 9 6 1	1968—69	增加比
總經費	£16,000,000	£45,000,000	181%
圖書費	£ 3,870,000	£10,402,00	169%
藏書數(卷)	60,000,000	94,000,000	57%
職 員	13,292	18,700	41%
貸出圖書(1,000名當卷數)	304	500	64%
職員基準對比(2,500名當1人)	15%	58%	43%

資料. Gardner. 前揭書. p.118.

新圖書館法이 施行된지 1年後 1966年에 政府는 近 30年동안 提議되어오던地方政府의 改編을 同謀하고자 Redcliffe-Maud卿을 委員長으로하여 地方政府의 構造에 關한 調查研究를 實施케 한 結果 1969年에 地方政府시스템의 大改革을 招來한 Redcliffe-Maud報告書⁽⁶⁸⁾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2年 地方自治法⁽⁶⁹⁾이 크게 改正되었다. 同報告書는 19世紀末에 形成된 地方政府構造의 가장 큰 缺陷으로, ① 都市農村間의 行政分割, ② county內 county council과 같은 district council間의 責任의 分配, ③ 人口와 財源面에서 너무도 規模가 작은 地方官廳의 세 가지를 들고 一定地域內 都市·農村을 함께 責任지는 人口 25萬이 넘는 大行政區域의 設置를 主張하였다.⁽⁷⁰⁾

1974年 4月부터 效力を 갖게된 이 地方自治法에 따라 公共圖書館法도 다

(66) Howell, Denis.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69, no. 2, Feb. 1967. p.36.

(67) Gardner. 前揭書. p.119.

(68) Royal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in England, 1966—1969. *Report*(Redcliffe-Maud Report), cmnd. 4040, 1969.

(69) Local Government Act 1972, c.70.

(70) Richards, S.G. *Introduction to British Government*. London, Macmillan, 1978. p.161.

시行政官廳의 問題를 비롯하여 이와 關聯된 條項이 改廢되지 않을수 없었다. 從前까지 獨立官廳이던 351개의 county, county borough, non-county borough (municipal borough)와 urban district는 이제 83개의 metropolitan district와 non-metropolitan county로 大幅 改編되었고⁽⁷¹⁾ 奉仕對象人口도 10萬에서 100萬까지 갖게되는 大行政區域으로 바뀌었다. 세 圖書館官廳의 平均奉仕對象人口는 28萬名⁽⁷²⁾이나 되며 第2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人口 10萬 未滿은 City of London, Isles of Scilly 및 Wales地方을 除外하고는 한곳도 없게 되었다.

第2表 Number of existing and new library authorities within the population ranges shown

Population in thousands	Below 40 100 250 500 750 1000 Over 1000							
	40	100	250	500	750	1000	1000	
Existing library authorities*								
England								
Counties	1	3	14	16	5	4	2	45
County Boroughs	1	32	32	9	4	—	1	79
London Boroughs	—	—	22	10	—	—	—	32
Municipal Boroughs	59	67	1	—	—	—	—	127
Urban Districts	53	9	1	—	—	—	—	63
Wales								
Counties	3	5	3	2	—	—	—	13
County Boroughs	—	1	2	1	—	—	—	4
Municipal Boroughs	9	3	—	—	—	—	—	12
Urban Districts	8	—	—	—	—	—	—	8
Total	134	120	75	38	9	4	3	383
New Library Authorities								
England								
Non-Metropolitan Counties	—	—	1	11	13	10	4	39
Metropolitan Districts	—	—	14	17	4	—	1	36
London Boroughs	—	—	22	10	—	—	—	32

(71) City of London과 32개의 London borough 및 Isles of Scilly는 統計에서 除外되어 있음.

(72)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The Public Library Service: Reorganization and After*. London, HMSO, 1973. p.8.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2).

Wales

Counties	—	1	1	5	1	—	—	8
Total	—	1	38	43	18	10	5	115

*Excluding the Isles of Scilly(2,000) and the City of London(4,000)

*An authority which together with another provides a joint service or which is provided with a service on an agency basis by another authority is counted separately for the purposes of this table. The present number of library systems is 376.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The Public Library Service: Reorganization and After*. London, HMSO, 1973, p.23.

한편 새로 生긴 地方官廳의 大部分은 Bains報告書⁽⁷³⁾의 延告를 袷아 内部組織을 統合하였고 그 方法에 따라 圖書館行政도 官廳마다 擔當部署가 多樣하게 되었다. 1976年の Tomlinson報告에 依하면 22個의 官廳은 教育委員會, 7個는 圖書館委員會, 其他 大部分은 娛樂과 文化等을 다루는 委員會와 合成되고 있다고 한다.⁽⁷⁴⁾ 이는 오늘날 公共圖書館이 갖고 있는 社會教育的機能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마땅히 是正되어야 할 課題로 생각된다.

要컨대 1964年 圖書館法이 여러 가지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그 影響 또한 至大하였지만 既存 地方官廳의 行政區域 境界를 脫皮하려는 意圖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行政官廳으로 因한 問題의 根本的解決에는 미치지 못한것이 事實이 있는데 地方自治法의 改正에 依한 地方官廳單位의 擴大化로 말미암아 이제야 McColvin의 꿈을 實現하는 契機가 마련되었다.⁽⁷⁵⁾ 이로써 1850年以來의 公共圖書館發展上 沮害要因을 모두 除去하는데 歷史的大團圓을 記錄하게 되었고 自活性을 가진보다 廣範한 地域을 바탕으로, 같은 境界를 갖게 된 教育, 保健, 社會事業官廳과의 緊密한 提携아래, 專門的人力, 컴퓨터, 視聽覺機器 複寫機等 總資源의 效果的利用과 均衡있고 效率性과 綜合性을 갖춘 公共圖書館奉仕시스템의 바탕이 完成되었다고 하겠다.

(73) Depertment of the Environment. *The New Local Authorities: Management and Structure* (Bains Report). London. HMSO, 1972.

(74) Tomlinson, Norman. "Libraries disorganised", *Municipal and Public Services Journal*, Vol. 84, no. 18, April 1976, p.514.

(75) McColvin은 30年前에 全國 92個官廳으로 한것을 提議하였다.

VII. 結論

公共圖書館奉仕는 本質的으로 地域社會住民에 依한, 住民을 爲한 地方自治團體의 職能이기는 하나 社會가 極度로 機能化, 情報化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國家의 綜合的情報政策에 依한 調整과 統制 및 支援이 없이는 均衡있는 標準圖書館奉仕를 모든 市民에게 提供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現代世界各國은 性格의 差異는 있으나 公共圖書館法의 基礎위에 恒久的이고 效率的인 公共圖書館政策을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公共圖書館法의 嘴矢는 1850年 英國의 公共圖書館法에서 찾을수 있는 바비록 圖書館法이 產業革命의 進行過程에서 發生한 社會問題를 解決하려는 一連의 社會改良運動의 一環으로 制定되긴 하였으나 供給이 需要를 創出한 事例를 提示함과 아울러 처음으로 稅金에 依한 圖書館의 無料公開主義原則을 確立함으로써 公共圖書館史上 新紀元을 이루하였다는데 큰 意義가 發見된다. 그러나 始作부터 人道主義의 改良主義에 立脚한 立法이었기 때문에 納稅者의 意思에 依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는 길은 마련하였지만 主로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規制條項이 많았던 것이며 “公衆의 大學”으로서의 真正한 公共圖書館像을 定立하기에는 數많은 沮害要因을 内包하고 있었다. 重要한것만 들면 ① 人口크기의 制限, ② 圖書館稅의 上限設定, ③ 圖書館法採擇節次의 複雜性, ④ 圖書館相互協力體制의 未備, ⑤ 國家의 指導監督權缺如, ⑥ 圖書館官廳의 零細性, ⑦ 法律採擇의 任意性等으로서 實際 法制定以後 14回⁽⁷⁶⁾에 걸친 大小의 改正是 모두 이러한 沮害要因의 漸次的 除去의 過程이었다고 할수가 있다.

人口크기의 制限은 1866年法에서 가장 먼저 撤廢되었으며 法律採擇節次는 1893年 都市地域에 限定되긴 하였지만 地方議會에서의 單純過半數의 賛成으로 法律採擇을 決定도록 簡素화되었다. 1919年 改正法律로 稅金의 上限이

(76) 이 가운데 基準되는 法律은 1850, 1855, 1892, 1964年の 4개의 公共圖書館法임.

撤廢되고 州政府가 圖書館官廳의 權限을 갖게 됨으로써 公共圖書館奉仕의 對象地域이 全國으로 擴大되었으며 이때부터 州의 圖書館問題은 州教育委員會의 所管이 되었다. Kenyon, McColvin, Roberts, Bourdillon等의 報告書를 土臺로 制定된 1964年 公共圖書館法은 自治團體의 公共圖書館奉仕義務化, 國家의 圖書館奉仕 指導·監督, 國家圖書館政策諮詢委員會의 設置, 圖書館相互協力의 義務化等 均衡있는 公共圖書館奉仕를 為한 充分하고도 必要한 條件을 充足시킴으로써 以後 各國에서 制定 또는 改正되는 公共圖書館法의 모델이 되었다. 自治團體와 圖書館協會間에 가장 어려운 問題로 남아 있던 圖書館行政區域의 廣域化는 1974年 地方自治法의 改正으로 비로소 實現되어, 民主自治理念과 現代行政國家의 要請을 승기롭게 調和, 오늘날 情報化 社會에 알맞는 效率的인 公共圖書館奉仕시스템의 基盤을 完成하게 되었다.

同法의 改正으로 從前 383個의 群小 圖書館官廳은 115個의 大中官廳으로 大幅減少되어 1942年 McColvin의 꿈이 1970年代 後半에 드디어 實現되었지만 公共圖書館의 基本目的, 國家의 具體的 補助金支援, 利用者의 制限撤廢, 圖書館委員會等에 關한 規定이 앞으로 補完되어져야 할 要素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보울러, 로버타 編, 張一世譯. *公共圖書館運營*.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 Bourdillon, H. T. "The working party on standards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Proceedings of the Public Libraries Conference* 1963. pp.3 —9.
- Callender, T.E.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Library Service. In: *The Changing Pattern of Librarianship: Papers read at the Weekend Conference...Folkestone*, 28—30 April, 1961, Penge, 1961. pp.5—14.
- Chandler, G. Th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In: Collison, R.L., ed. *Progress in Library Science*. London, Butterworths, 1966.
- Forsyth, J.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Library Review*, no. 147, Autumn 1963. pp.181—6.

- Harrison, K.C. *First Steps in Librarianship: a Student's Guide*, 4th ed. London, Deutsch, 1973.
- Keith-Lucas, B. "From the Roberts Committee to the Maud Commission", *Proceedings of the Public Libraries Conference* 1966. pp.23—9.
- Landau, T., ed. *Encyclopedia of Librarianship*, 2nd ed. Cambridge, Clarke, 1966.
- Library Association. "Memorandum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 and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57, August 1955. pp.314—5.
- . "Th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some interpretations of general interest",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67, Jan. 1965. pp.19—20.
- Morris, R. J. B. "The adoption process for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Kingdom", *Local Government Review*, August 28, 1976. pp.553—7.
- Murison, W. J. *The public Library: Its Origins, Purpose and Significance*, 2nd ed. London, Harrap, 1971.
- .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a review",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65, June 1963. pp.213—7.
- Paton, W. B. "Exiting times—another view of how the LA responded to the wind of change",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79, no.7, July 1977. pp.364—5.
- Pemberton, John E. "A century of library politics",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 79, no.4, April 1977. pp.181, 184—5.
- . *Politics and Public Libraries in England and Wales 1850—1970*.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7.
- Roberts, Sir Sydney. "Some reflections on the Roberts Report", *Proceedings of the Public Libraries Conference* 1959.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59. pp.30—7.
- Sewell, P. H. Government Concern for Libraries. In: Whatley, H. A., ed. *British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1966—70*.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2.
- . "The Roberts Report and its significance for British librarie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16, Jan-Feb. 1962. pp.23—8.
- Stockham, K. A. *The Government and Control of Libraries*, 2nd ed. London, Deutsch, 1975.
(脚註에 나온 文獻은 除外하였음)

A Study on the Public Libraries Acts in England

Choe Dal-Hyun*

〈Abstract〉

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附 錄

韓國圖書館·情報學會 會則

第一章 總 則

- 第1條** (名稱) 本學會는 韓國圖書館·情報學會라 稱한다.
- 第2條** (目的) 本學會는 圖書館 및 情報學研究를 通하여 學問의 發展에 貢獻하며 會員相互間의 有機的인 協力圖謀를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所在地) 本學會의 本部는 大邱市内에 둔다.
- 第4條** (事業) 本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研究發表會 및 講演會
 2. 學會誌, 研究論文集 및 學術資料 刊行
 3. 其他 學會가 必要로 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 第5條** (會員의 種類 및 資格) 本學會의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 으로 하고 그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圖書館 및 情報學을 研究하며 本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로서 會員 2人 以上的 推薦을 거쳐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2. 準會員은 圖書館 및 情報學을 研究하는 學生으로서 會員 1人 以上的 推薦을 거쳐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3. 名譽會員은 本學會의 發展에 寄與한 個人 또는 團體로서 任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6條 (會員의 權利 義務)

1. 正會員은 本學會 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決議權과 任員의 選舉權, 被選舉權을 가지며 會費負擔과 會則遵守의 義務를 진다.
2. 準會員은 本學會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各種會議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會費 負擔과 會則遵守의 義務를 진다.

3. 名譽會員은 本學會 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發言할 權利를 가진다.
4. 會費를 1年以上 滯納하는 者는 會員의 資格을 袭失한다. 다만 滯納會費를 納入함으로써 資格을 回復할 수 있다.

第三章 任 員

第7條 (任員과 任期)

1. 本學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① 會長 1人
 - ② 常務理事 1人
 - ③ 理事 6人
 - ④ 監事 2人
 - ⑤ 書記 1人
2.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3. 任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는 會長이 이를 委嘱하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8條 (任員의 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書記는 會長이 指名 한다.

第9條 (任員의 職務)

1. 會長은 本學會를 代表하여 事務를 統轄하여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2. 常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하며 本學會의 諸般事務를 管掌한다.
3. 理事는 本學會의 研究活動과 財政 等 重要事業은 물론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을 密談하고 本學會의 設立目的을 効果的으로 成就할 수 있도록 會長을 積極 補佐한다.
4. 監事는 本學會의 財政 關係 事務遂行에 관한 事項을 監事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5. 書記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諸般業務를 遂行한다.

第四章 會 議

第10條 (總會의 種類와 召集)

1. 本學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 또는 會員 1/3以上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1個月 以内에 이를 召集 한다.
3. 總會의 議事는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서 決議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1條 (總會의 決議事項)

1. 會則의 制定과 改定
2. 任員의 選出
3. 決算事項
4. 其他 主要事項

第12條 (任員會)

1. 任員會는 本學會의 會務 및 事業計劃을 審議, 決定한다.
2. 任員會는 新入會員을 認准한다.
3.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任員의 1/2 以上的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3條 (論文審查委員會) 研究論文誌에 掲載된 論文의 學術性을 위하여 論文審查委員會를 두며 委員은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한다.

第14條 (運營) 本學會의 運營은 會費 및 其他收益金으로 한다.

第15條 (豫算) 本學會의 豫算은 任員會에서 審議하되 總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16條 (會計年度)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第五章 附 則

第17條 (會則變更) 會則 總會出席會員의 2/3 以上的 賛成으로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 (會則의 施行) 本會則은 總會의 認准을 얻은 날로부터 그 効力を 갖는다.

(制定 : 1974. 4. 20.)
(改正 : 1978. 11. 25.)
1981. 2. 20.